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박춘희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11월 0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례의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여부를 재량에서 의무로 규정
(안 제17조 관련)

나. 현행 조문 상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보다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제1호 관련)

- 1)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 →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로

현재 관내 대상업소는 159개소로 확인되며

(일반음식점 93, 휴양콘도미니엄 15, 집단급식소 37, 호텔업 8, 유통센터 6)

'21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4,655톤을 배출해(가정: 3,882톤) 전체 발생량의
54.5%를 차지하였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조례 상 의무로는

사업 개시 30일 전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을 이행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자면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지도·점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